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경제교육 필수교과 반영 및 지역경제교육센터 기능 강화〉
■ 허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85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경제교육의 필수교과 반영 등(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등)	2
2. 지역경제교육센터 기능 강화 및 실적 평가 근거 신설(안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허 의원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4. 14.

다. 회 부 일 : 2025. 4. 15.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소비, 생산 및 금융 등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현행 경제교육은 단편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고 있으며, 금융 태도 및 행동 변화까지 유도하는 체계적인 교육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에 취약한 노년층,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이 미흡하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되었음에도 선택과목으로 배치되어 있는 등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내 경제교육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민의 경제·금융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학교 및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교육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경제·금융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학교에서의 경제교육 활성화(안 제5조 제3항 및 제4항)

경제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현장에서 경제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고, 경제교육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국민 대상 경제교육의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 지역경제교육센터의 교육 확대 등 역할 강화(안 제9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지역경제교육센터가 경제교육을 시행할 때 지역별 · 세대별 대상을 고려하도록 하고, 노년층,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금융범죄 피해예방교육을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지역경제교육센터의 경제교육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다.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실적에 대한 평가(안 제11조제2항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경제교육센터의 교육 품질을 관리하려는 것임.

IV. 검토의견

1. 경제교육의 필수교과 반영 등(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등)

현 행	개 정 안
○ 경제교육의 활성화 - 국가는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신 설> - 국가는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u>교육 대상별로</u> 적합한 경제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경제교육의 활성화 - (현행과 같음) -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에 필수 교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과정에 경제교육을 반영하여야 함 - 국가는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u>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대상별로</u> 적합한 경제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인력의 경제교육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u>제공</u>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인력의 경제교육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u>제공</u> 하고 경제교육과 관련된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현행법 제5조1)는 국가에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체계적으로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경제교육이 활성화

- 1) 「경제교육지원법」 제5조(경제교육의 활성화) ② 국가는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경제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7조²⁾는 이러한 경제교육을 위하여 경제교육인력의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나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교과 교육과정에 경제교육이 반영되어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사회 과목 내 일부 범주로서 경제생활이나 국가경제 등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통합사회 내의 범주 중 하나로 경제교육이 반영되어 있고, ‘경제’ 교과나 ‘금융과 경제생활’, ‘인간과 경제생활’ 등은 선택 교과로 편성되어 있는 등 경제교육이 학교 교과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임.

[현행 교과 과정 내 경제교육 반영 현황]

학교	교과	범주	주요내용
초	사회 (34학년)	경제생활	자원의 희소성, 경제활동, 합리적 선택, 생산과 소비 활동
		국가경제	지역 간 교류, 상호의존 관계
	사회 (56학년)	경제생활	가계와 기업의 역할, 근로자의 권리, 기업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국가경제	경제성장의 효과, 경제성장과 관련된 문제 해결, 무역의 의미, 무역의 이유
중	사회	경제생활	합리적 선택, 경제생활과 금융생활, 기업의 역할과 기업가 정신
		시장경제	시장의 사례·특징, 수요·공급, 시장가격의 결정, 시장가격의 변동

2) 「경제교육지원법」 제7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인력의 경제교육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	교과	범주	주요내용
고	통합사회	시장경제와 지속가능발전	시장경제와 합리적 선택, 경제주체의 역할, 국제분업과 무역, 금융생활
	경제 (선택)	경제학과 경제문제	경제학과 경제의 기본 문제, 합리적 선택, 경제학적 사고 방식
		미시경제	시장의 수요와 공급, 공공부문의 조세와 공공재,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
		거시경제	거시경제 변수, 경제성장과 정책, 경기변동과 정책
		국제경제	국제거래와 무역 원리, 무역 정책, 외환시장과 환율
	금융과 경제생활 (선택)	행복하고 안전한 금융생활	금융과 금융생활, 금융 의사결정, 디지털 금융환경과 금융서비스, 금융사기 예방 및 구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거래와 계약
		수입과 지출	수입과 소득, 소득 결정요인, 지출과 소비, 지불수단, 합리적 소비, 예산과 예산 관리
		저축과 투자	저축의 경제적 의의, 저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자, 세금, 물가 등), 예금자 보호제도, 금융 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투자에 따른 위험과 자기 책임의 원칙, 투자자 보호제도
		신용과 위험관리	신용과 책임, 신용관리, 신용회복 지원제도, 일상생활 속 위험, 보험의 원리, 고령사회와 연금
	인간과 경제생활 (선택)	의사결정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 비합리적 의사결정 유형, 공정성
		직업세계	취업과 창업, 노동 문제, 기업가 정신
		경제공동체	소득분배의 원리, 사회적 경제, 지식정보 사회와 디지털 경제
		미래사회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주: 음영은 필수교과

자료: 기획재정부

이에 개정안은 경제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필수 교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교육위원회나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교육위원회나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과

정에 경제교육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에서 경제교육의 비중을 높이고 경제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로 「통일교육지원법」³⁾은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경제교육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의무가 재량으로 변경됨에 따라 오히려 경제교육인력 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경제교육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경제교육 연구 및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제공하고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문언의 해석에 따라서는 개정안의 취지가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경제교육인력에 대한 연구 및 활동 지원 근거 규정은 별도의 항으로 신설

3) 「통일교육지원법」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경제교육의 활성화)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5조(경제교육의 활성화)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교육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에 필수 교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과정에 경제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u>
③ 국가는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u>교육 대상별로</u> 적합한 경제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 <u>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대상별로</u> ----- ----- -----.

현 행	개 정 안
④ (생 략) 제7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인력의 경제교육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u>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② ~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7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① - ----- ----- ----- -----<u>제공하고 경제교육과 관련된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2. 지역경제교육센터 기능 강화 및 실적 평가 근거 신설(안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다음 사업을 수행 2. <u>지역 실정에 맞는</u> 경제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4. <u>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u>	○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다음 사업을 수행 2. <u>지역별 및 세대별 교육대상을 고려한</u> 경제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4. <u>노년층,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 및 금융범죄 피해 예방교육</u>
○ 실적보고서의 제출 -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경제교육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 설>	○ 실적보고서의 <u>제출 및 평가</u> - (현행과 같음) - <u>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받은 경제교육사업의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사업에 그 평가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u>

현행법 제9조4)는 지역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교육

- 4)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지역경제교육센터는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2개 이상의 시·도를 묶어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2.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경제교육단체 간의 협력망과 지역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4.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
 5.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사업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사업 중 경제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시 세대별 교육대상을 고려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뿐만 아니라 금융범죄 피해예방교육까지 실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임.

2025년 5월 말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16개 지역경제교육지원센터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이나 취약·소외계층,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2024년 기준으로 전국 지역경제교육센터의 경제교육을 수강한 인원은 총 37만 5,488명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 중 학생이 약 21만명, 취약·소외계층이 약 15만명임.

[2024년 센터별 경제교육 실시 현황(명)]

구분	전체	학생	취약·소외계층	일반인 등
서울	25,127	12,230	12,220	677
부산	17,235	10,006	5,440	1,789
대구	24,602	12,919	11,096	587
인천	10,582	5,241	4,970	371
광주	17,386	7,443	8,539	1,404

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분	전체	학생	취약·소외계층	일반인 등
대전세종	31,594	17,931	13,489	174
울산	14,535	9,589	4,139	807
경기	16,842	8,932	7,455	455
강원	19,862	8,683	10,606	573
충북	18,059	8,030	9,783	246
충남	17,027	7,190	9,413	424
전북	38,846	27,822	10,018	1,006
전남	25,516	11,026	13,991	499
경북	35,712	25,923	9,009	780
경남	22,679	10,845	11,043	791
제주	39,884	30,009	9,371	504
합계	375,488	213,819	150,582	11,087

자료: 기획재정부

개정안은 지역경제교육센터가 경제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세대별 교육대상을 고려하도록 하여 노년층이나 청소년층에게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경제교육의 효용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또한, 최근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뿐만 아니라 금융범죄 피해예방교육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범죄 피해 가능성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필요성이 있음.

한편, 현행법 제11조⁵⁾는 지역경제교육센터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경제교육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체계에서는 지역경제교육센터가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것에 그칠 뿐 그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가 차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등의 적절한 환류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적보고서가 형식상의 결과보고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제출받은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환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실적보고서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5) 「경제교육지원법」 제11조(실적보고서의 제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경제교육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 운영) ① · ② (생 략)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 략) 2. <u>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u> <u>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u> <u>운영</u> 3. (생 략) 4. <u>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u> <u>한 경제교육</u> 5. · 6. (생 략) ④ · ⑤ (생 략)	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u>지역별 및 세대별 교육대상</u> <u>을 고려한</u> ----- ----- 3. (현행과 같음) 4. <u>노년층, 장애인 및 저소득층</u> <u>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지역주</u> <u>민에 대한 경제교육 및 금융</u> <u>범죄 피해예방교육</u> 5. · 6.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실적보고서의 <u>제출</u>) (생 략) <u><신 설></u>	제11조(실적보고서의 <u>제출 및 평</u> <u>가</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u> <u>따라 제출받은 경제교육사업의</u> <u>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사</u> <u>업에 그 평가결과가 반영될 수</u> <u>있도록 하여야 한다.</u>

문 의 처
02)6788-5157